	보 도 자 료	
	작성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재성 부연구위원 (044-960-0361)
	배포	국토연구원 지식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 즉시보도가능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5호 발간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상 필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50여 년간의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정책 성격이 변화

○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제도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선진국형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시점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5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난 35년(1985~2020)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중심도시 외연 확산은 억제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결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주변 개발 적합지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는 토지 개발 위치보다 개발 시기에서 나타나고,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발 유력지역이 분석 기간 이후 지정된 제3기 신도시 등 실제 대규모 해제 위치로 결정

□ 1970년대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었지만,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획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외연 확산 억제에서 도시권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1971년 제도 도입의 목적인 ‘도시 확산 억제’에서 벗어나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권 단위의 성장관리 수단으로 정책 목적 재정립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도시 성장 방향이나 기반시설 부담 등 광역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하여 해제·존치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보전·관리·활용의 다층 구분을 통하여 다른 정책 수단과의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첨부. 국토정책brief 1075호(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담당자(☎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